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0. 30.(금) 14:0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과 위원님들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매일방송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0-58-26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매일방송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9. 행정처분(안)”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PP 승인·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승인 및 재승인 관련된 경과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0일 위원회는 종편·보도PP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승인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10년 12월 31일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매일방송은 두 차례 유상증자를 거쳐서 2011년 4월 21일 승인장 교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6일 위원회는 (주)매일방송의 종편PP 승인 의결을 하였고, 12월 1일 (주)매일방송은 방송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14년 11월 18일 그리고 2017년 11월 27일 두 차례 재승인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제기 이후의 경과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6일 본 건에 대해서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주)매일방송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30일 차명주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하고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11월 12일 (주)매일방송과 대표자를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리고 '20년 7월 24일 금융위 형사고발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원회는 (주)매일방송을 방송법 등 위반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가 있고, '19년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관련해서 (주)매일방송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주)매일방송의 최대주주인 (주)매일경제신문사에 방송법 제8조 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20년 3월 13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20년 9월 29일 (주)매일방송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받아서 '20년 10월 12일에 청문을 실시하였고, 10월 28일에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대상 사업자 현황은 밑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내용입니다. 종편PP 대상법인 선정 시부터 승인 의결 시까지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매일방송은 회사의 자금으로 556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감추고자 임직원 명의를 차명주주로 활용하였고, 종편PP 승인을 받고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원회에 자본금 모집이 완료되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매일방송은 2010년 12월 승인 심사 당시 제출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의 모집계획을 맞추고자 2011년 4월 2,769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증자를 포기함에 따라 조달금액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위원회에 제출한 계획대로 유상증자를 완료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매일방송 및 계열사 임직원 16명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주식청약서와 주주명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매일방송은 임직원 차명주주 16명에 대한 주식대금을 (주)매일방송의 자금으로 입금한 사실을 감추고자 당해 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2011년부터 '18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계속하여 거짓 작성하고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매일방송의 차명주주 주식대금 납입행위는 회사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유상증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외부 자금의 유입이 없으므로 방송사업 투자를 위한 (주)매일방송의 자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매일방송은 회사자금으로 차명주주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후, 유상증자 과정을 종료하였고 위원회에 승인장 교부를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매일방송이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접수받고 동 서류를 토대로 신청법인의 적정성과 자격여부 등, 즉 소유제한이나 결격사유,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허위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에 2011년 5월 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매일방송에 대해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결과입니다. (주)매일경제신문사는 종편PP로 선정될 당시 위원회가 정한 승인 세부심사기준의 하나인 '주요주주 지분을 변경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대금을 신문사 자금으로 입금하고, (주)매경닷컴은 임직원 1명의 주식대금을 차입하여 입금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종편PP 최초 승인심사 당시 정하여 공표한 세부심사기준을 통해 승인 의결 후부터 승인장 교부 전까지 지분율을 포함한 주요주주 구성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한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기준의 세부내용은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매일방송의 최대주주인 (주)매일경제신문사와 주요주주였던 (주)매경닷컴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주요주주 구성 변경금지 기준을 위반하게 됨에 따라 이를 피하고자 임직원 4명을 차명주주로 활용하였습니다. 매경신문 및 매경닷컴의 차명주주 명단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매일경제신문사는 2017년 중 차명주주였던 이OO, 전OO, 최OO으로부터 (주)매일방송 주식을 주당 7,500원에 재매입하면서 주식대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위 3명의 임직원은 차명주주라고 판단됩니다. (주)매경닷컴이 윤OO을 대신하여 지급한 주식 청약대금을 2011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미수금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윤OO로부터 이자를 전혀 수령받지 않았으며, (주)매경닷컴이 주식 청약대금 명목으로 빌린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약 13억원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매일방송이 대신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윤OO는 (주)매경닷컴의 차명주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조사결과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일부 주주(6인)와 일정기간 내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즉 Buy-back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종편PP 최초 승인 당시 정한 세부심사기준을 통해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페이지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매일방송은 이러한 세부심사기준을 알고, 승인 심사 당시 (주)매일경제신문사와 일본경제신문사 간에 바이백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위원회에 알린 바 있습니다. 한편, (주)매일방송은 2011년 4월 유상증자 시 주주 모집이 어렵게 되자 일부 주주와 바이백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회사 본인이 직접 주주로부터 부정하게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상법상 허용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백 계약체결은 납입자본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매일방송은 바이백 계약에 따라 일부 주주 이OO와 삼OOO 기업으로부터 (주)매일방송의 주식을 주당 7,500원에 되사주었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상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임원 등을 기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바이백 계약 체결 현황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종편PP 대상법인 선정심사 시까지의 조사결과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종편PP로 선정되기 이전인 '09년부터 회사자금을 활용한 임직원 차명주주가 있었고, 2010년 종편PP 승인 심사 시에 이러한 차명주주를 포함한 주주명부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주)매일방송은 보도PP로 방송사업을 운영 중이었던 2009년부터 2010년에도 임직원 정OO, 양OO, 김OO, 이OO 등 4명의 차명주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임직원 4명은 '09년 및 '10년 중 (주)매일방송의 자금을 활용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차명주주가 되거나, (주)매일방송의 일반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차명주주가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중 (주)매일방송은 주주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위 4명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위 4명은 차명주주라고 판단됩니다. 즉, 2011년 이전에도 회사자금을 활용한 임직원 차명주주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 및 2017년 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을 당시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주)매일방송이 2014년 및 2017년 종편PP 재승인을 받을 당시에 차명주주가 기재된 허위 주주명부와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4년 및 2017년에 위원회에 제출한 (주)매일경제신문사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에서도 차명주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경과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금융위 고발에 따른 검찰기소 그리고 1심 재판결과의 주요 내용은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법성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1의2)에 따라 최초 승인의 경우에는 취소, 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승인유효기간 단축 6개월이 가능합니다. 각각 합산이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중 및 감경 사유는 그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 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최초 승인에 대한 위법성 판단입니다. 첫 번째, (주)매일방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종편PP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첫 번째입니다. 임직원 명의 차명주주 관련사항입니다. (주)매일방송은 2010년 12월 31일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에서 556억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납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차명주주를 기재한 주주명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로부터 종편PP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초 승인 당시 납입 자본금 관련된 사항은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납입자본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위장하고 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할 당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였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납입자본금 등의 특정 심사항목을 선정하여 승인 최저점수를 별도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즉, 위원회는 사업 진입 초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과 관련된 '납입자본금 규모'를 심사항목 중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특정 심사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매일방송은 납입자본금 규모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심사를 받아서 종편PP 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즉, 심사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상의 향후 5년간의 방송분야 투자,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 계획 등은 3,950억원의 납입 자본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 (주)매일방송을 포함한 4개의 법인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즉, 당시 위원회는 종편PP 신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중점심사항목으로 평가하였고, 계획한 자본금 납입이 모두 완료된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매일방송이 승인장 교부를 신청할 당시 위원회에 자본금을 차명주주를 활용해서 모았다는 사실과 자본금을 모두 모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위원회는 (주)매일방송의 자본금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바이백 계약 체결에 대한 위법성 판단입니다. 위원회는 2010년 11월 10일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하면서 주주와 체결한 바이백 계약은 자본의 건전성을 해치는 계약이므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심사 시 알리지 않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였습니다. 관련한 세부심사기준은 밑의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매일방송이 체결한 바이백 계약이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동 계약은 (주)매일방송의 자본 건전성을 해치는 계약이면서 상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불법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매일방송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바이백 계약을 체결하고 종편PP로 승인을 받은 행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매일경제신문과 매경닷컴의 차명주주에 대한 위법성 판단입니다. (주)매일경제신문사 및 (주)매경닷컴이 임직원 4명을 차명주주로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주)매일방송의 유상증자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는데, (주)매일경제신문사는 납부한 주식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차명주주의 주식을 되사줄 때 주식대금을 주지 않고 동 미수금을 상계 처리한 점이 있으며, (주)매경닷컴이 차명주주의 주식대금 납부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약 13억원)를 (주)매일방송이 2019년 12월까지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임직원 4명이 (주)매일경제신문사 및 (주)매경닷컴의 차명주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

위는 (주)매일방송이 위원회가 세부심사기준에서 제시한 주요주주 지분을 변경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위원회는 (주)매일방송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매일방송은 차명주주의 실제 주주가 (주)매일경제신문사와 (주)매경닷컴일 경우,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사실상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원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위원회에 이러한 차명주주가 포함된 허위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종편PP로 최초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경공제회 및 사우회 명의를 활용한 우회투자 의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매일경제신문사는 2010년 중 (주)매일방송의 주식(210만주)을 매경공제회 및 매일경제신문 사우회에 양도하였으나, 주식대금을 두 단체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동 주식이 (주)매일경제신문사의 차명주식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주)매일경제신문사가 2010년 매경공제회 및 사우회에 양도한 (주)매일방송의 주식이 (주)매일경제신문사의 차명주식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매경공제회 및 사우회가 주식대금을 (주)매일경제신문사에 지급하지 않아서 주식을 되돌려 준 점과 (주)매일경제신문사가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차명주식으로 볼 정황은 일부 있으나, (주)매일경제신문사가 매경공제회 및 사우회에 2차례에 걸쳐 주식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던 사실이 있고, (주)매일방송이 2010년 이후 매경공제회 및 사우회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경공제회 및 사우회가 보유하고 있던 (주)매일방송의 주식을 (주)매일경제신문사의 차명주식으로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승인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두 번째입니다. (주)매일방송이 2014년 및 2017년 재승인 당시 차명주주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주주명부, 특수관계자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사항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행위를 숨기고자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습니다. (주)매일방송은 차명주주를 감추기 위해 2011년부터 자기주식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부채는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허위 재무제표 제출로 인해 재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의 재무건전성 평가 부분과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평가에 왜곡이 발생하였으며, 금전적인 투자가 수반되는 다른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도 왜곡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주)매일방송이 공시한 '19년도 감사보고서상 수정된 과거 재무제표로 방송평가 중 재무건전성 평가 부분을 재계산할 경우, 유동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의 유동비율 점수가 최저점이 되어 방송평가 점수가 연도별로 각각 6점씩 낮아지게 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 점수가 당초 점수에 비해 낮아져서 2013년 및 2014년의 방송평가 점수가 각각 1.5점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 밑의 <표>는 (주)매일방송이 수정해서 제시한 재무제표로 다시 계산한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 및 2017년 재승인 시 방송평가의 재정건전성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표> 밑의 당구장 표시는 방송평가는 700점 만점이며, 재승인 심사 시에는 이를 400점 만점으로 환산되므로 방송평가 총점에 -6점의 영향이 있으면 종편 PP 재승인 심사에는 -3.43점의 영향이 있고, 이것은 유동비율의 점수입니다. 방송평가 총점에 2년간 -1.5점의 영향이 있으면 종편PP 재승인 시에는 -0.57점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채비율 점수입니다. 이에 따라, '17년 재승인 시 (주)매일방송은 심사 총점 651.01점을 획득

하였으나, 방송평가 점수만 재산정하더라도 총점이 650점에 미치지 못하여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의 요건에 해당하였을 것입니다. 계산하면 점수는 647.01점이 나옵니다. 아울러, 재무제표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될 경우 금전적인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비계량 평가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허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에 대한 위법성 판단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시 임직원 차명주주가 포함된 허위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신청법인의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즉, (주)매일방송이 허위 주주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회가 방송법 위반 등 방송사업자의 적격 여부 확인 시 중대한 오류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시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매일경제신문사의 특수관계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제출된 특수관계자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보고 방송법상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매일경제신문사의 차명주주를 반영하여 지분율을 계산해본 결과 2014년 및 2017년 모두 30%를 초과하여, 재승인 당시 (주)매일경제신문사가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최대주주의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 위반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주)매일경제신문사는 차명주주 등의 행위로 인해 (주)매일방송의 주식 3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어, 방송법 제8조 일간신문사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주)매일방송은 2019년 말에 차명주식을 모두 자기주식으로 인식하고 '20년 3월 주총을 통해 자기주식 400만주를 전부 소각함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는 당초 5500만주에서 5100만주로 감소하였습니다. '20년 7월 말 (주)매일경제신문사의 (주)매일방송 주식소유비율이 32.64%임에 따라 여전히 방송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수관계자 포함된 지분을 관련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매일경제신문사는 방송법 제8조 일간신문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바,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매일방송의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매일방송은 '19년 말에 차명주식을 모두 자기주식으로 인식하고 '20년 3월 주총을 통해 자기주식 400만주를 전부 소각함에 따라 자본금이 '19년 말 2,797억원에서 2,59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0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식 소각을 통해 자본금 201억원을 감소시킨 행위는 2011년 최초 승인 시 3,950억원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결국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매일방송이 종편PP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매일방송에 대한 청문 결과입니다. 지난 12일 14시에 위원회에서 이광범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하여 장승준 대표, 류호길 대표, 박광배 변호사를 참석시켜서 청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매일방송의 의견진술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 종편PP 예비승인 이후에 투자를 약속했던 투자처가 대량 이탈하는 등 투자모집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출자를 하지 못한 이유는 매경신문사의 지분을 변동금지에 막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이백 계약이나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가 어려웠거나 급박하게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금액 55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000억원이 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년 3월 20일에 주총에서 전액 소각을 결의함으로써 차명주식은 해소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시에 제출한 자료는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등은 있는 그대로 제출한 것이고, 그래서 이를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국 이후 약 70개월간 시청률이 종편 4사 중 1위였다거나

경영 사정이 좋은 편이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법 상태가 모두 해결됐으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청문절차에서 제출된 의견서 등을 통하여 방송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년도 종편PP 승인 당시 차명주주를 활용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허위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Buy-back 계약을 체결하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라고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중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히셨고, 허가·최초 승인의 취소, 재승인의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종편PP 예비승인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나 Buy-back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현재 이 문제를 해소했고 또 안정적인 방송을 이루어 나갔다는 부분과 경영상황도 개선되고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서에 적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여지도 있고, 과거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 처분의 감경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매일방송의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의견청취 개요는 10월 28일 14시 30분에 (주)매일방송의 최대주주사의 대표인 (주)매일경제신문사 장대환 대표, 그리고 (주)매일방송의 류호길 대표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언론에도 브리핑을 한 바가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안)입니다. 먼저 <1안>입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매일방송에 대해 2011년 5월 6일 의결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매일방송에 대해 2014년 11월 18일 의결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처분과 2017년 11월 27일 의결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세 번째, 방송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 최소를 위해 승인 취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2개월간 방송연장명령을 <붙임 2>와 같이 부과한다. 네 번째, 방송법 제18조 제1항 및 형법 제137조를 위반한 (주)매일방송(舊 (주)매일경제티브이)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한다입니다. <1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초승인 처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종편PP 승인의 필수요건인 납입자본금을 거짓으로 충당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2010년 12월 승인심사 시에 모집하기로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이 당시 승인장을 교부받기 위한 필수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매일방송은 3,950억원 중 556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장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주)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최초승인 당시 투자이탈로 인한 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해 시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이나 계획된 의도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주)매일방송은 종편PP로 승인을 받기 전인 2009년부터 회사자금을 활용하여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명주주가 기재된 기존 주주명부를 종편PP 심사 시 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주)매일방송은 최초승인 심사 이후에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모집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승인 심사 전부터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심사 시에도 이를 포함한 허위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매일방송은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자료를 조작하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한 행위에 대해 1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주)매일방송은 종편PP 사업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가 정한 심사 관련 계획 및 기준 등을 무력화시키고 방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승인 심사 등의 공무 행위를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인 심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한 (주)매일방송은 종편PP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문주재자도 (주)매일방송이 저지른 행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면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허가·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킨 (주)매일방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승인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승인에 대한 처분입니다. (주)매일방송의 위법행위가 2014년 및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시에도 그 상태로 유지되었고, 2017년 재승인 심사결과에서 (주)매일방송의 위법행위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를 정정하였을 경우, 심사당시 650점 이하 점수를 받아 재승인 거부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매일방송의 이러한 행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문주재자도 2014년 및 2017년 종편PP 재승인 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차명주주가 포함된 허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의2에 따라 2014년 및 2017년 각각의 재승인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승인은 동법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승인 취소 처분에 따라 2014년 및 2017년 재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2014년 및 2017년 재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재승인의 처분을 직권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송연장명령입니다. 승인 취소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과 관련된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송연장명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이 제작 중이거나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외주제작사의 피해와 방송법에 따라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해야 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방송연장명령은 최대 12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9년 말 기준 (주)매일경제신문사가 방송법 제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매일방송에 대한 승인 취소로 인해 (주)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은 실익이 없으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사고발여부입니다. 방송법 제10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공무원 고발 의무 규정에 따라 (주)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수행하는 승인·재승인 업무를 방해한 사항도 명백하므로 형법 제137조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안>입니다. 첫 번째, (주)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간 아래의 업무 <가>, <나>, <다> 중 한 가지를 정지한다, 다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간 부여하게 됩니다. <가>

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전부, <나>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중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 <다>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중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입니다. 방송법 제18조제1항 및 형법 제137조를 위반한 (주)매일방송(舊 (주)매일경제티브이)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한다입니다. 세 번째는 (주)매일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입니다. 다음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권고사항 첫 번째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정지 사실을 고지할 것. 다만, 고지방법과 고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개시 1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것. 두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대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등을 송출할 것. 다만, 업무정지 시간대 송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정지 개시 1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것. 세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네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주)매일방송은 동 건과 관련 있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다섯 번째입니다. (주)매일방송은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되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이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최초승인에 대한 처분입니다. 최초승인 시 (주)매일방송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1안>과 검토의견이 동일합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의2 감경사유 등을 고려해 '승인취소'를 '업무정지 6개월'로 감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문주재자도 2010년 종편PP 예비승인 이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바이백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개국 이후 안정적인 방송을 해온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주)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로 출범한 이후 뿐만 아니라, 보도PP로 출범한 '95년부터 현재까지 약 26년간 방송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종편PP 중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건수가 가장 적은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매일방송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어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방송제작 등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의 피해와 승인취소로 방송이 완전히 중단됨에 따른 시청자 피해, 고용 문제 등도 감안하여 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 허가·승인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승인 취소와 업무정지 방안의 비교형량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승인에 대한 처분입니다. (주)매일방송의 위법행위가 2014년 및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시에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7년 재승인 심사결과에서 (주)매일방송의 위법행위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를 정정하였을 경우 심사당시 6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재승인 거부가 가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매일방송의 이러한 행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문주재자도 2014년 및 2017년 종편PP 재승인 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차명주주가 포함된

허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승인취소' 처분의 감경으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재승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각각 하더라도 방송법령상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의2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정지의 유예입니다.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해 방송을 중단 중이거나 기 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와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방송이 예고된 프로그램이 방송이 안 될 경우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정지의 범위입니다.

(주)매일방송이 최초승인 및 재승인 시 행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전부의 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방송법 제18조제1항은 업무정지의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 일부의 정지는 주시청시간대의 방송을 정지하게 하는 방안과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의 방송을 정지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의 방송의 정지는 (주)매일방송이 행한 위법의 정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제재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처분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매일방송이 행한 위법행위의 정도에 과징금 부과(최대 1억원) 처분은 비교형량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권고사항 부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매일방송의 업무정지로 인해 시청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업무정지 사실의 고지와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정지로 인한 직원고용 문제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일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액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최초 승인 시 정부와 약속한 자본금이 모두 납입될 수 있도록 권고함이 타당합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주)매일경제신문사가 방송법 제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제한 규정 위반 관련된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매일경제신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매일방송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하여 주식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의 기한을 '20년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난 이후로 하되, 법 위반사실이 수개월 지속된 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재승인 만료기한으로부터 4개월의 기한을 더한 2021년 3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은 동 안건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주)매일방송의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형사고발여부는 '<1안>'과 검토의견이 동일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주)매일방송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해 주시면 11월 초에 (주)매일방송에 통보하고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관련 법령과 방송연장명령 결정사항,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무처 보고내용 <1안>, <2안>으로 처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BN의 허위 조작을 통한 분식회계 사건은 2020년 이 사회에 법과 원칙, 정의는 무엇인가를 묻는 언론계의 아주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1심 판결에서 MBN의 경영진이 자본시장법, 상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불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청문을 통해 당사자들도 허위와 거짓, 부정한 행위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이것을 또한 저희들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더 이상 다툼은 없어 보입니다. 국가로부터 방송사가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고, 반복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MBN에 대한 행정처분은 한국 언론 종합편성 채널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중대한 전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결은 오직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본 사안의 중대성이나 영향력 때문에 학계 언론학자는 물론이고 법률가와 언론인 또 관심 있는 평범한 시민들 등 수십 명과 접촉해서 여론을 수집한 후 정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법과 원칙의 관점에는 나누어 보고 또 가중·감경 부분은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본 위원회가 법리검토를 하기 위해 이미 사법부가 먼저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사건은 자본시장법, 상법 모두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사무처 보고로 충분히 잘 알게 되었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MBN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에 자기주식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했다. 금융위는 MBN의 이런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 및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런 일련의 행위가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임원을 기소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MBN이 거짓으로 또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검찰, 법원 모두 MBN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를 중대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상법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MBN이 2011년 4월 일부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 약정을 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서 2017년 일부 주주의 주식을 투자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되사준 행위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이 MBN과 임원을 기소한 데 대해서 법원은 종편PP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이렇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MBN의 방송법 위반 부분을 조사했는데 지금 보고된 것처럼 MBN의 행위를 2011년 종편PP 최초 승인 시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MBN의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작성했고 납입자본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위장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회는 MBN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서 종편PP로 승인받은 것으로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종편PP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본 위원회는 종편 최초 심사

시 납입자본금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소위 바이백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만 MBN은 바이백 계약을 체결하고도 심사 시에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MBN은 본 위원회가 승인장 교부조건으로 제시한 주요주주 지분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MBN은 차명주주의 실제 주주가 (주)매일경제신문사, (주)매경닷컴일 경우에는 MBN에 대한 주요주주 지분율이 사실상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 위원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즉, 차명주주가 포함된 허위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종편PP 최초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MBN은 수십 명의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하여 허위와 거짓, 부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편 허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데, 진실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야 할 언론기관 MBN이 방송법, 상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이런 것을 골고루 위반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중대한 범죄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중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방송법상에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서 첫 번째가 승인 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사무처에서 2가지를 검토 보고했는데 <1안>과 <2안>은 범죄의 심각성, 중대성, 또 감경사항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주재자는 MBN 관련 청문보고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방송법에서 말하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청문주재자는 말을 하고, “또 이와 같은 사유는 방송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연하게도 MBN 불법·위법 사항은 이미 위에서 보드시피 사법부에 이어서 청문주재자도 아주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되었지만 MBN의 임원진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언론기관이 사회의 비리나 부정, 허위를 막고 또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든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사가 지켜야 할 대원칙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을 ‘제4부’로 부르면서 존중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권력의 부패, 비리, 거짓을 감시·보도해야 할 언론기관이 스스로 거짓과 허위, 불법으로 국가로부터 방송 라이선스를 받아냈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본 위원회가 이 허위 서류에 속아서 최초승인을 준 것도 잘못이지만 뒤늦게 이런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즉각 바로 잡지 못한다면 저는 더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저는 본 위원회 회의도 부끄러운 전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MBN은 보시다시피 경영진들이 합세해서 불법으로 최초승인, 재승인, 재재승인을 받았는데 6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구조조정 등으로 애꿎은 구성원들만 피해를 보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6개월 후에는 불법 면허가 합법이 되고 장씨 일가는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본 위원회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줄 그런 전지전능한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감경사항에 대해서도 매우 중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감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언급되고 있는 롯데홈쇼핑 건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문주재자도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를 적용해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들면서 감경여부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제안했는데, 그러나 저는 상품을 파는 롯데홈쇼핑과 뉴스, 시사물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여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합편성채널을 같은 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롯데홈쇼핑의 경우는 한 임원의 허위 경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BN은 공적가치가 중요시되는 언론기관이 저지른 반사회적 범죄라는 특수성, 또 수십 명이 넘는 범행 가담자 수, 최초 승인과 재승인 등 과정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로 행정기관을 반복적으로 속여 왔다는 점, 어떻게 롯데홈쇼핑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는 1, 2심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처럼 인용,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본 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맞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과 원칙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제 소결론은 법과 원칙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MBN 사건은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합니다. MBN은 방송사 선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거짓과 조작으로 국가기관을 기망해서 방송법을 위반했습니다. 원천 무효로 승인 취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또 상법이나 일반 회사법보다 방송법은 더 엄격하게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유·경영 분리가 방송사는 중요하기 때문인데 MBN이 일반회사도 아니고 방송사인데 이런 엄격한 방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법과 원칙, 상식을 뒤집는 무리한 행정 판단을 하게 되면 본 위원회가 거꾸로 재량권 남용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부정 승인이 업무정지 사안인지도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가중·감경사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법 제18조에서 물론 위반 사항에 대해서 4가지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형식적으로 일견 어떤 위반사항이든 위 4가지 제재방안 선택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조문의 입법 의도를 고려해서 위반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제18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받거나 등록 변경한 때를 첫 번째 위반사항으로 규제로 삼고 열세 번째는 점점 낮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조문의 위반 정도가 중한 순서대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1호에서 규정한 사안은 입법권자가 가장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13호는 가장 경한 위반사항과 비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1부터 13호의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방안 중 택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허가·승인·등록 취소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제1호에 규정된 가장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중대한 위반 제재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별표1의2 규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의2의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1의2제2항의 개별 기준 다목을 보면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에 따라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별표 일반기준 다목에는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두고 있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MBN 변호인

측에도 감경사유 4개 중에서 무엇이 해당되는지 물어봤을 때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4가지 다 보지 않고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뭐냐 하면 감경사유 대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감경사유로 내세워서 감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같이 검토해 봤더니, 일단 MBN은 처음 해당 위반행위자가 아닙니다. 저는 최초승인, 재승인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또 모범적으로 이것을 해 왔느냐 해서 살펴봤더니 2017년 종편PP 재승인 심사 결과, JTBC가 731.39를 받았고, 채널A가 661.91점을 받고, MBN은 651.01을 받아서 기준점수 650점을 겨우 넘었습니다. 이것도 재정건전성 점수를 재환산해 본 사무처의 보고에 따르면 647.01로 나와서 이것은 기준점수를 못 넘었다는 그런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적을 거둔 학생을 모범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MBN은 당시 과락을 받아서 승인 취소 위기 상황에 몰렸던 위기의 종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심사 항목 <5>번 항목에 보면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100점 만점의 37.06점을 받아서 과락을 받았습니. 이런 방송사를 어떻게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MBN은 감경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중 처벌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가중 처벌사유로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적용됩니다. 가중사유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거꾸로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다시피 알 수 있는데, 저는 감경보다 가중처벌 사항이 그 외에도 더 많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고 부적절한 논리로 MBN의 징계수위를 낮추게 되면 저는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고 행정부처의 굴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성적으로 제가 또 감경할 수 있는 대목이 없나 면밀히 살펴 봤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윤리적 행태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서약서 부분입니다. MBN은 재승인 과정에서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MBN의 이런 서약서는 행정기관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의 이런 서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냐고 확인했더니 유효하다고 답변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하니 지금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매우 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MBN은 2019년 당시 누적결손금이 405억원에 달하는 법인인데 장대환 회장은 퇴직금 36억원을 챙겨 갔다면서 도덕적 해이는 물론 업무상 배임 논란도 일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중대한 범법행위가 발생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법적 처벌을 빠져나가고 나서 장 회장은 퇴직금으로 저렇게 거액을 챙겨 나가서 구성원들은 물론 사회로부터 손가락받고 있는 것은 언론사 사주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작에 MBN 경영진의 총사퇴와 대국민 사과, 방송 수익 사회 환원 이런 자구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데, 일벌백계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게 할 본 위원회가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방통위 구성원들의 자긍심은 물론, 국민 앞에 면목이 없지 않을까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과 같이 가장 중대한 위반사항에 관하여 허가·승인·등록의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처분 행함은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법률 문헌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의도,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본 건과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승인 취소가

법률의 목적과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1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김창룡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주)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오늘 처분은 방송사업자의 범법행위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그런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처리해야 할 법적 권한이기도 하고, 국민이 행정부에 부과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주)매일방송이 2010년 종편 사업 허가·승인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을 여러 이유로 채우지 못하게 되자 556억원에 이르는 자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납입자본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에서 금지한 행위,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방송사업을 승인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실을 근거로 최초 사업승인을 받았고 재승인, 재재승인 과정에서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사실관계는 본 위원회 사무처의 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공개, 비공개 청문, 법원의 판결로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첫째, (주)매일방송이 방송사업 승인 신청 시에 차명주주를 활용한 것은 방송법이 하지 말도록 명시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명확하게 포함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주)매일방송은 이 같은 행위를 금융당국에 적발되기까지 10년 가까이 감추고 있었습니다. 셋째, (주)매일방송은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매일방송은 차명주주를 포함시킨 이유로 종편 사업 신청 당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당초 투자약속을 했던 투자자들이 투자 약속을 철회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던 다급한 상황이었고, 2010년 당시 (주)매일방송의 대주주인 (주)매일경제신문사가 대주주 출자 제안서는 30%를 넘기지 않고도 출자할 수 있는 자본력은 갖추고 있었으나 최초승인 신청 시 투자 지분 약속을 변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차명출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편 방송국 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여론은 (주)매일방송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종편사업 신청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업자들도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유독 (주)매일방송만 이런 편법을 저질렀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반적인 것일 수는 있어도 (주)매일방송에만 해당하는 특수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한 언론사나 개인의 여론시장 장악력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사업에 대한 대주주 소유제한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었으나 최초승인 시 제출한 대주주 출자 제한 규정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다급했고 최초 승인을 받은 뒤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런 불법사항을 해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매일방송은 본 위원이 참석한 청문절차에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주)매일방송의 행위는 방송법 제18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명백하고 그 위반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매일방송의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법 제18조는 이런 경우 처벌수위를 4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둘째 6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셋째 광고의 중단, 넷째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입니다. 이 규정 가운데 네 번째 항목, 즉 제16조에 따른 승인 유효기간 단축은 (주)매일방송의 승인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그 실효성이 없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승인의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광고의 중단 등 3가지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18조의 집행을 위해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즉 방송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행령은 본 법 규정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시행령 개별 규칙, 개별 기준 다항은 같은 위반을 했을 경우 처벌 규정은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단 한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법 집행자인 행정청의 재량권을 완전히 봉쇄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본 법이 포괄적인 처벌규정을 둔다면 시행령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고의성 등을 감안해 처벌순위를 세분해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법은 본 법 규정보다 시행령 규정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법에 규정한 위법사항을 명시적으로 저질렀고, 이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채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사항을 볼 때 (주)매일방송의 법 위반 정도와 법에서 정한 처벌순위를 고려할 때 집행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택할 수 있는 수위는 승인의 취소가 마땅해 보입니다. 모든 법은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법 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익, 즉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처분 당사자의 이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란이나 피해를 서로 계량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동체 이익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늘 따져야 합니다. 모든 법은 그 법의 집행 과정에서 범법행위의 반복성 등으로 인해 법대로 처벌했을 경우 사회적인 정의실현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중하거나 죄는 중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법에 정해진 대로 물을 경우 초래하게 될 사회적인 혼란이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감경할 수 있는 감경조항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법 제18조는 그 집행과정에서 감경조항을 2개의 가중사유와 4개의 감경사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가중사유는 첫 번째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위반 내용의 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감경사유로는 첫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둘째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위반행위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넷째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자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 열거하고 이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과 관련한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1번 기준 다항에서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등록의 취소인 경우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주)매일방송의 방송사업 승인을 취소할 경우에 얻게 될 법익과 그로 인해 초래될 피해를 상호 계량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N은 위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이후의 사업적 성과 및 개선의 노력으로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3,950억원을 구성하지 못하였으나 3,00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인 종편 방송사업의 기반을 갖추고 현재까지 9년여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등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편 개국 이후 65개월 동안 종편 월·화 시청률 1위를 기록해 왔고, 또한 2017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방통위 제재건수에서도 종편 4사 가운데 가장 적은 22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 700여명을 비롯해 간접고용까지 기여함으로써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이에 약 3,000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 종편 4사에 부여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방송통신서비스 기반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성실 납부에 임하여 현재까지 종편 4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BN은 2019년에 12억 6,338만원을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명으로 구성된 556억원 규모의 주식 중 상당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9년 4월까지 약 355억원 상당의 차명을 해소했고, 실질자본금을 확충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올해 2020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전액 소각 처리함으로써 자기주식 보유 상황을 모두 해소했음을 알려왔고, 이는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스스로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의 집행은 처분 상대자가 있고 그 대상자는 자신을 향해 행해진 법의 집행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비교해 형평성에 어울리는지, 또 그 법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불의의 피해를 낳는 것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는 그 법이 과연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법부에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도 보편적인 법 집행과 수용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원용하는 것이 행정부에 부여된 재량권의 남용을 절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당사자가 수긍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김창룡 위원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사례라고 말씀하셨지만 같은 롯데홈쇼핑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바로 방송법 제18조에 규정한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습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승인의 취소나 전부 영업정지가 아니라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일부 영업정지가 바로 주시청 시간대에 대한 방송금지처분입니다. 그러자 롯데홈쇼핑은 이를 법원에 제소를 했고, 지난 2018년 9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에 대해서 판결했는데 판결의 내용이 바로 롯데홈쇼핑이 거짓으로 승인을 신청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시청시간대에 방송을 금지시킨 것은 그 피해가 너무 과다하므로 행정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다라는 판결이 바로 롯데홈쇼핑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들이 계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주)매일방송이 저지른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한 처분이 과연 승인의 취소가 마땅한 것이냐 하는 점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따라서 (주)매일방송의 행위는 벌을 받아 마땅하나 승인의 취소나 전부 업무의 정지는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보고, 저는 일부 방송의 중단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부 정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앞서 두 위원님들의 상세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이번 MBN 사건에서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8월 26일에 최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2018년 금감원에 본 사건이 제보가 되었고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 또한 이번 의견청취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경영진이 국민의 알권리를 책임지고 있고, 공공재인 방송의 최고책임자가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책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8년 금감원에 제보가 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장대환 회장께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보고가 별로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MBN이 이것을 제대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또 기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영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직접적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장대환 회장이 당시 회장이었고 2014년 재승인 과정에도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장대환 회장이 재재승인 과정에서도 책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기소돼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 MBN이 최초 승인이 거짓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재승인이나 재재승인도 원인이 첫 번째 승인 자체가 부정한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재승인과 재재승인 역시도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MBN 과정을 쫓 살펴보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외주제작자들의 탄원서도 접하게 됐고, MBN 종사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한 언론시민단체,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리에서 또는 직장에서 몸소 실천했던 분들의 의견 또한 청취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내리는 오늘 아침에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그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아직까지 다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선행해야 할 점은 검찰에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고발조치가 취해진다는 사무처의 보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은폐해서 최초승인을 얻은 MBN은 마땅히 승인 취소의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1995년도부터 보도전문채널로서의 기능을 해 왔고 그리고 미약하지만 대국민 사과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가 만시지탄이지만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승인취소를 해야 하나, 저희 종사자나 외주제작자들의 처해진 조건 그다음에 시청자의 권리 등을 포함해서 6개월 업무정지 전부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부위원장님은 6개월 전부 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사안을 조사하느라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분식

회계 등 행위의 위법성은 앞서 말씀해 주신 세 분의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정말 관련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다른 사업자와 달리 더욱 준법과 공정 가치를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사이기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광고의 중단, 승인 유효기간의 단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과 합리성의 근거는 행정처분을 통한 공익의 극대화, 즉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의 극대화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무처가 제시한 <1안> 승인의 취소는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안> 가운데 6개월 전부 영업정지도 방송사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승인 취소에 가깝습니다. 6개월 동안의 피해는 물론 6개월 후 방송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광고 시장 등을 감안하면 거의 재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나 제작사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왜 최고경영진의 과거 잘못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와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의문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MBN의 승인 과정에서의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행위로 다른 경쟁 언론사가 종편 승인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이후 MBN은 무난히 방송해 오고 있습니다. 준법과 공정 가치를 훼손한 것은 크게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당장 큰 피해자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면 지금 승인 취소 또는 6개월 동안 전부 방송을 중단시킨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과 관련 종사자의 피해는 물론, 현재 MBN을 즐겨 보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빼앗기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 제시한 <2안> 가운데 주시청대를 제외한 새벽시간대에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 처분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없다,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익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은 일부 시간대 방송 중단과 최고 경영진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처벌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인 취소가 아닌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라고 한다면 당사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법 운영의 정신에 맞다고 보입니다. 반성하고 더 좋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 운영입니다. 행정처분의 원칙은 배제가 아닌 관리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BN 측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 사회가 부여한 방송의 사명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새벽시간대 영업정지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까지 네 분 위원님이 모두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 위원회는 합의제기구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5명의 위원님들이 이 사안의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그 논의결과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차 의견을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승인 취소부터 일부 업무정지 중에서도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2안> 중 <다>안에 해당되는 이런 의견

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의견은 처음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 의견을 들은 이후 다시 수정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보니까 세 위원님들께서 제가 선택한 <1안>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합의정신을 강조하시고, 저 역시 이런 합의정신은 위원회의 성격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 범행의 수법이나 범죄의 정도로 봐서는 도저히 <1안>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김효재 위원님께서 법 집행 시 얻을 이익 법익과 잃을 법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따져 달라는 말씀, 또 안형환 위원님께서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합의성, 내지 실효성 이런 것을 고민해 달라고 하니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혼자 남기보다는 저도 <2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2안>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또 다시 시청시간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의 형평성, 법익, 아까 법 집행 시 비교형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신에도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2안> 6개월 전면 영업정지까지는 제가 물러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다른 분들의 업무정지 의견에 동의하시면서, 다만 6개월 전부 전면 정지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1안>인 승인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다고 보이고, 업무정지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업무정지의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제가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6개월 업무정지 전부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유를 들자면 방송을 5년 이상 해 왔다는 점이고, 종사자와 외주제작자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경사유로 6개월 전부 업무정지인데, 앞서 두 위원께서 더 많은 이유를 들어서 감경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의 감경을 하는 것보다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이 MBN에 대한 행정처분의 결정은 어찌 보면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한국의 언론 방송사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언론방송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불행한 일들이 있었고, 그런 불행한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김창룡 위원님께서 본인의 승인 취소에 대한 결정을 일정 정도 뒤로 하면서 6개월 영업 전부 정지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물론 검토하셔서 오늘 의견을 내신 것이라고 보이지만 김창룡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본 회의의 결정을 합의에 기초해서 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행정청의 처분 이후의 상황을 한 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사자인 (주) 매일방송은 만약에 승인의 취소나 전혀 다를 바 없는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그 사안 가지고 사법부로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로 가면 몇 년이 걸리지 모르는 지루한 쟁송의 과정을 거쳐서 사법 판단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매우 차디찬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이든 차별하지 않고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는 전부의 정지가 아니라 일부의 정지 가운데에서도 비록 그것이 아까 김창룡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 시장에서 여론을 나누는 회사와 물건을 파는 회사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바로 주시청시간대로 결정해서 행정청이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 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의 전부 업무정지는 바로 부분적인 업무정지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뿐만 아니라 승인의 취소나 사실상 언론사에 오랜 동안 근무해 본 저의 경험에 따르면 6개월의 업무정지는 사실상 방송사나 신문사가 문을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업무정지를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방송이 그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어쩌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때 그렇게 지루한 쟁송의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력의 낭비와 비용의 낭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히 김 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MBN과 관련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입게 될 피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물론 승인의 취소가 마땅하나 나머지 합의정신에 따라서 6개월의 업무정지로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6개월의 전면 업무정지는 승인 취소나 사실은 반복됩니다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행정청은 바로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그런 판단을 존중해서 행정력을 집행하는데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웬만하면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똑같이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안 된다는 데 대해 동의합니다. MBN이 결정에 따라서 사법부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MBN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의 감경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 행정청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려사항을 다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딱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 넘어가는 그런 규정을 들이대서 우리가 함부로 적용하는 이것이야말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거꾸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권한으로 어느 규정에 근거해서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직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아까 법의 정신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여기에 우리는 얽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청은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뿐이지, 저희들에게 그런 많은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자칫 저희들의 선택과 판단이 MBN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의 권위나 신뢰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범죄를 저지른 MBN에 대한 고민과 그들의 영업에

대한 고민,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겠지만 우리 처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 **안형환 상임위원**

- 거듭 말씀드리지만 MBN의 행위가 엄벌이 필요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러나 행정 처분을 내릴 때 꼭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승인 취소와 6개월의 전부 영업정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광고 시장 등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개월 방송을 하지 않는 다음에 다시 방송을 재개했을 때 거의 재기불능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벌을 내릴 때는 6개월의 처벌을 내린다면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BN이 반성하고 새로운 틀에서 정말 공익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각심을 줄 수 없다',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최고 경영자에 대한 우리가 형사처벌함으로써 그들이 처벌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직원들이나 또 관련 종사자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최고경영진들의 10여년 전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직장을 잃고 또 일자리를 잃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진, 이 범죄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정의 실현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의 업무정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경영자의 책임 때문에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만,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이고, 방송은 국민에게 공공재입니다. 2014년도에 불법한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고발은 아니지만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때 당시 경영진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두 번째 감경사유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의 청문절차와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좀 안일했고 뭔가 숨겨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MBN 측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태도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최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내부 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MBN 측에서 성의 있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또 감경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적 처벌을 하겠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9년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최고경영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니깐 "허위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MBN 측이 공식 입장을 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자신들의 잘못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적 인정이라 함은 최고경영자가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승계하려고 했던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지요. 결국은 이것은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치이지, MBN 측에서 알아서 사과한다거나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감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저도 앞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코로나19로 기업 환경이 매우 어렵고 또 방송 시장 역시 녹록치 않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적어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저야 할 종합편성 채널에서 스스로의 노력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또는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변화를 피하려고 했던 점 자체는 국민 지탄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방송을 해 왔다는 점이 감경사유이긴 하지만 오히려 오랫동안 방송을 해온 매체에서 그런 범법행위가 있었고 은폐하려고 했던 점은 죄질이 무겁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저희는 인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지만 2011년도에 벌어진 일 때문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두 번, 세 번의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전부 영업정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저희가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향후 방송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의 하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6개월 전부 업무정지를 말씀하시고, 안형환 위원님께서 주시청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 중 일부, 심야시간대의 업무정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김효재 위원님께서 의견이 일부 정지만 말씀하셨는데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도 <2안> ㉠항으로...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이고,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안에 없는 안이 제기된 것이 아닙니까? 의안에는 <2-다>항이 비주시청시간대,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대한 업무정지인데 그중에 또 일부 제안을 하신 분도 계셔서, 일단 제 생각에는 좀 더 합의를 위한 노력들을 해 보고 의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40분인데 4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40분 정회 】

○ 한상혁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짧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의안을 발표해 주시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논의 결과에 따른 의결주문 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 (주)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간 아래의 업무(㉠, ㉡) 중 1가지)를 정지한다. 다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다.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전부,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중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까지, 일 6시간), 이하는 기존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2가지 안으로 성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각자 견해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우선 제 생각에 반복됩니다만 6개월의 방송 전부를 업무정지하는 것은 승인의 취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없습니다. 전과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언론사 사주, 우리나라 방송사 사주들의 도덕성이나 준법성,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고귀한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라고 언론사에서 강조하는데 그것을 실천해야 할 언론사, 특히 방송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집단도 아니고 공적책임이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방송사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부위원장님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특별히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굳이 손을 들고 이런 절차 없이 제가 의견표명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의 엄중함은 위원님들 모두 인정하신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해 온 과정이 방송법 및 시행령 등 법령에 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서로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이런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롯데홈쇼핑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 영업정지가 중한 처분이긴 하나 그로 인해서 방송사업이 취소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런 것은 객관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전부의 6개월 업무정지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최종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잠깐만요,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발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은 (주)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전부를 정지한다. 다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다. 두 번째, 방송법 제18조제1항 및 형법 제137조를 위반한 (주)매일방송(舊 (주)매일경제티브이)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한다. 세 번째, (주)매일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다음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 첫 번째, 기존의 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 안건 처리는 마쳤지만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결국은 표결이 되었고 숫자로 논리가 부정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범법행위에 대한 처분함에 있어서 반복됩니다만 그 처분의 법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방송법 제18조가 규율하고 있는 방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과연 그 입법의 목적이 실효되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분은 결국은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최종 판단까지의 최소한 2, 3년이 과거의 사례로 보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받는다면 오늘의 저의 무기력함은 어디에 누구에게 뭐라고 가서 해야 할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보임되고 나서 처음 기자실에 갔을 때 제가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기구이다. 합의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것이고, 특히 야당 추천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될 것이다. 단, 거기에서 그 경우에 숫자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는 것은 끝내 막아보고 싶다”는 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가 결국은 숫자로 결정이 되고 그 숫자로 결정되는 것에 소수의 편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말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5기 방통위가 시작되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과정에서 합의하고 또 그 합의된 결과에 입각해서 집행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 대해서도 승인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하에 결론을 냈으면 가장 긍정적이었겠지만 도리 없이 표결을 했는데 그 표결이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의견을 낸 것이고, 그에 대한 결정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수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저희의 결정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을 토대로 해서 가감에 대한 판단을 기초해서 2가지 안을 놓고 표결한 것이고, 그 표결의 결과가 6개월 전부 영업정지가 내려졌다는 점은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김효재 위원님의 그런 심정을 백분 이해합니다. 수적 무력감, 좌절감 이런 것,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이 사안 자체가 <1안>을 고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승인 취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1안>을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좌절감이 더 큼니다. 그 좌절감은 김효재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지만 그러나 서로 보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제 정신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위원장님은 이쪽저쪽 편을 들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위치에서 이런 일을 꾸려가고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섭섭한 경우가 많습디만 그래도 저희

들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더 많은 것을 보고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합의정신을 살려달라는 그런 우리 내부의 공감대가 있어서 <1안>을 포기하고 <2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은 다르지만 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좌절감이나 지금 제가 처음으로 표현하지만 그 좌절감은 저도 못지않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저의 생각과 다른 안이 결정되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행정처분은 그 행정처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행정처분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또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결과를 듣게 될 MBN의 종사자, 그리고 관련 직원들의 아픔이 먼저 눈앞에 떠오릅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공익과 법익의 균형을 이루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행정처분을 할 때는 공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승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청으로서 국민을 향한 방송사업자의 책무가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시청자, 고용 노동자 등 연관산업 그리고 유사 처분사례 결과로 예상되는, 그 처분으로 예상되는 사후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최종적인 합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5기 위원회 출범 후에 처음 맞는 중요한 사안에서 상임위원님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처분 이후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주)매일방송의 위법행위의 엄중함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향후 지금과는 다른 무거운 인식과 쇄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가되는 권고 사항을 포함해서 특히 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성실히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중편채널 그리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승인·재허가 심사절차가 또 진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 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다른 방송사업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재승인·재허가 심사과정을 보다 철저하고 엄밀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허가·승인과 관련한 제반 제도의 정비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방송이 보다 나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차기 회의는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27분 폐회 】